



안전한 대한민국, 분리발주가 만듭니다

# 전기공사 분리발주

# 한국전기공사협회 소개

## 연혁

- 1960. 04 대한전기공사협회 설립인가
- 1963. 02 전기공사사업법 제정 공포
- 1967. 03 노동부인정 직업훈련소 설치
- 1977. 11 한국전기공사협회로 개칭
- 2015. 04 전기·에너지·자원산업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대표기관 선정
- 2020. 01 (재)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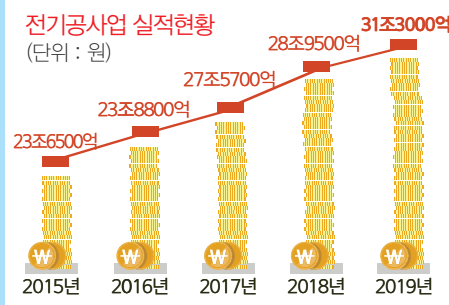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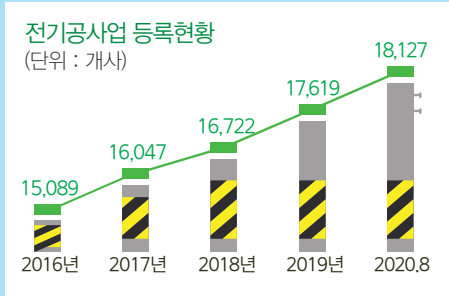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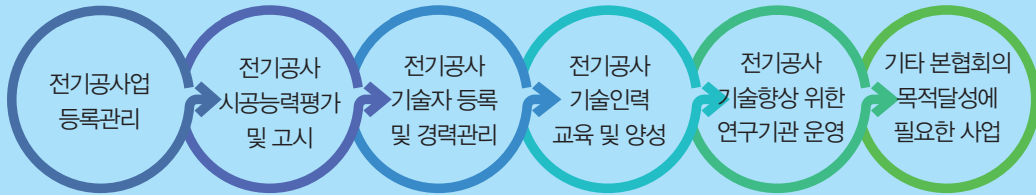
## 설립 근거

전기공사사업법 제25조에 근거한 전기공사사업 유일의 법정단체

##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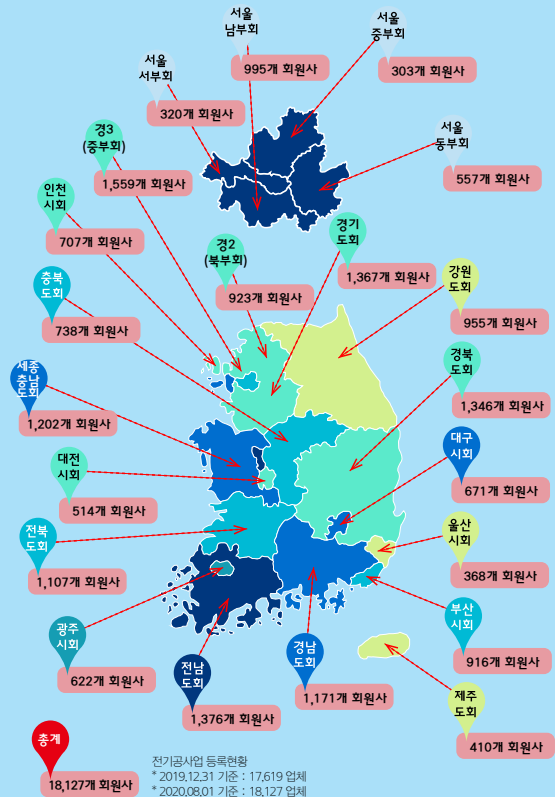
전기공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의 복리증진  
 전기공사 시공방법의 개선 및 기술향상  
 전기공사사업의 품위유지  
 국가 전력사업에 기여

## 주요업무



## [전기공사사업 회원업체 현황]

2020년 08월 01일



##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정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법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를 건설, 통신, 소방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제도로서, 전문 전기공사기업이 입찰에 참가하여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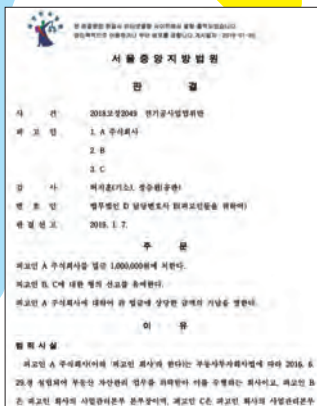
**법령** 전기공사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원 판례 전기공사 분리발주 위반시? ... 법적 처벌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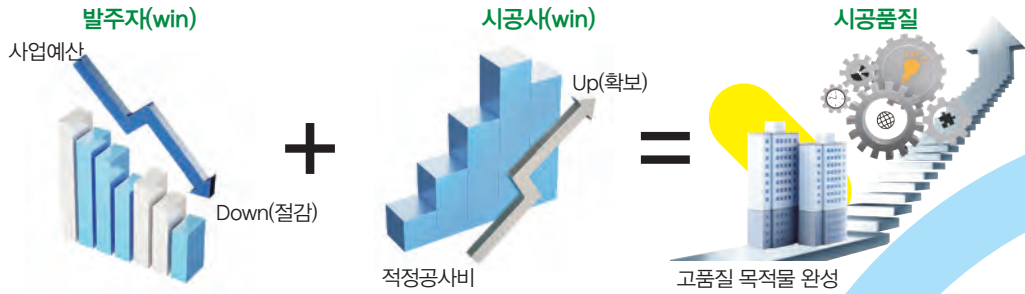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한 A사에 대해 전기공사법 분리발주 위반으로 법원이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049, 2019.1.7.)

⚡ 전기공사법정이 원칙적으로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토록 한 것은 소규모 전기공사 전문업체의 입찰 참가 기회를 높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 발주 시 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

⚡ 건설공사 입찰 단계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선택한 것은 발주자의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 일 뿐 해당 공사에 내재하는 본질적인 특성상 전기공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기공사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됨



##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유용성



분리발주는 전문 전기공사기업의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 간 형평성 유지 및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함.

전기공사의 특수성, 전문성, 기술력을 갖춘 전문 전기공사기업이 수주해 직접 시공함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안전·책임시공은 물론 고품질 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발주자의 권익 보호와 만족도를 높임.

2018년도 기준 통합발주(턴키, 기술제안, 대안입찰)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7.8%**로 매우 높으나, 분리발주 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종합심사낙찰제 78.1%, 적격심사 83.9%로 상대적으로 낮아 발주기관의 공사비용 절감효과가 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추적 핵심 역할을 선도하는 전력산업은 고난이도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상 반드시 분리발주가 필요하며, 대형 건설사의 저가 하도급, 부당특약, 불공정 행위 등 건설업계에 만연한 갑질과 부조리를 척결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경기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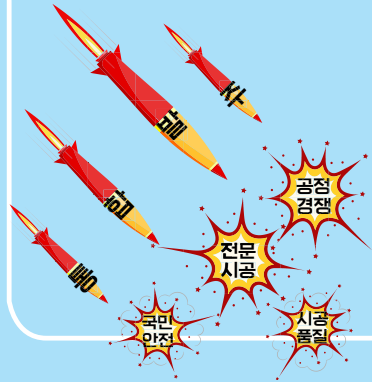
## 기술형입찰(턴키, 기술제안) 통합발주 문제점



⚠️ 턴키발주 시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자가 모두 담당,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참여 제한, 발주자의 공사수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조정기능 및 경험 축적과 지식습득 기회 결여

## 기술형입찰(터키, 기술제안) 통합발주 문제점

- 기술형(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은 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종의 설계와 시공을 통합 발주하는 대형공사로 국내 일부 대형 건설사(상위 1% 미만)만 입찰 참여 및 수주 독점, 건설시장의 불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부익부 빈익빈 등 양극화 현상 심화 초래
- 대형 건설사는 전기공사업등록만 보유하고 실제 전기공사는 전문 전기공사기업에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공사비 일부를 제하고 저가로 하도급, 이는 시공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직결되어 결국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 발생



“○○교 건설공사(터키)” 붕괴사고 2명 사망 12명 부상	2012.09.22
“○○발전소 ○호기 신축공사(터키)” 가스누출사고 1명 사망 8명 부상	2013.11.26
“지하철 ○호선 연장선 ○단계 건설공사(터키)” 싱크홀 발생	2014.08.25
“지하철 ○호선 연장선 ○○~○○ 구간 건설공사(터키)” 붕괴사고 4명 사망 10명 부상	2016.06.01
“○○호 횡단도로 건설공사(○공구)(터키)” ○○대교 붕괴사고	2017.08.26

- 최근 기술형(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발주자의 과도한 책임 전가, 적정공사비 미확보, 고난이도 공사에 대한 전적인 관리책임, 수익성 보장 곤란 등의 사유로 건설사가 입찰 참여를 기피하고 있으며, 유찰 발생비율 증가로 사업 중단 및 공사 지연 사례 급증

## 기술형입찰(터키, 기술제안) 전기공사 분리발주 사례 확산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전기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해 입찰방식은 기술형입찰로 수행하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 확산

전북개발공사 “전주 만성 지구 A-2BL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기술제안)”	2018.12.28
서울도시주택공사 “고덕강일 2단지 제로에너지 아파트 공사(기술제안)”	2019.06.10
충북대학병원 “의생명진료연구동 건립공사(기술제안)”	2019.08.28
부산도시공사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공사(기술제안)”	2019.12.26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기술제안)”	2020.03.12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남부 신청사 건립공사(기술제안)”	2020.04.01





⚡ 자주 혼동하는 분리발주 위반사례 6가지

케카맨이 들려주는  
**‘자주 혼동하는 분리발주 위반사례 6’**

**사례.1**  
**소규모 전기공사 = 통합발주(?)**

견적을 받아보니 전기공사 금액이 너무 적네. 이 정도면 전기만 따로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겠어.

아닙니다. 전기공사는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건설, 통신, 소방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해야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금액이 적어도 전기공사는 따로 분리발주 해야 한다는 거야?

**Yes!**

그렇습니다. 고난이도 기술력이 필요한 전기공사의 특성상 안전시공을 위해 전기공사는 반드시 분리발주가 원칙입니다.

**사례.2**  
**분담이행 = 분리발주(?)**

이번 전기공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타 공종과 통합발주하고 대신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했으니 분리발주한거나 다를 없겠지?

아닙니다. 분담이행방식은 공동도급의 한 형태로 구성원 간의 자격보완 등을 위한 계약체결 방법일 뿐 분리발주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분담이행방식은 분리발주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이죠! 이 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분리발주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사례.3**  
**분리발주 = 관급공사만 적용(?)**

민간기업인 우리 회사는 분리발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닙니다. 민간과 관급공사는 공통적으로 분리발주 의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자주 혼동하는 분리발주 위반사례 6가지

**사례.4**  
**현장 설치도  
물품구매  
= 제조업체(?)**

이번에 수배전반을 현장 설치도 조건 물품구매로 발주하려는데 제조업체에서 설치까지 가능하겠지?

- 입찰공고 -  
oo가관  
ooo물품구매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아닙니다!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시공 가능하며 전기공사업 등록이 없는 제조업체에서 설치하는 건 불법 무등록 시공에 해당합니다.

그럼 제조업체는 물품 납품만 하고, 설치는 전기공사업체가 따로 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죠!

전기설비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설치 부분을 분리해서 별도 공사로 발주하거나 현장 설치도 조건 구매 시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5**  
**산업·기술  
융복합  
= 통합발주(?)**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기술 융복합으로 전기설비에 타업종의 기능이 부가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 타업종으로 통합발주해야 하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전기설비에 단순히 일부 타업종의 새로운 기술이나 장치 등이 부가되는 것이라면 핵심적 주된 목적과 기능은 전기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기공사로 발주하면 됩니다.

아, 그럼 입찰참가자격에 타업종의 공사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다만, 타업종의 부가 기능이 전기설비와 전혀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유지·보수 가능한 공사라면 전기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가능할 것입니다.

**사례.6**  
**기술형입찰  
= 분리발주  
예외(?)**

이번 대형공사 건은 공기가 촉박해서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괄입찰이나 기술제안입찰로 통합발주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겠지?

아닙니다. 기술형입찰이라고 해서 전부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로서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이 복합 공종에 적용되어 분리발주 시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만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제안입찰은 아예 통합발주가 안 된다는 건가?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대형공사들이 입찰방법은 기술제안입찰로 시행하고 전기공사는 분리발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EPCO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 : 1566-1177 사도회 1566-2288  
문의처 : 신성장사업처 동반성장지원팀 Tel. 02-3219-0663~5  
찾아오시는 길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8가길 8 (등촌동)

